

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
관한 조례안
(행정안전국 교육지원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77호
- 나. 제출자 : 윤영희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8. 2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8. 22.

2. 제안이유

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독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 및 결혼·이주 등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, 대상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나. 문해교육의 기본원칙과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 ~안 제5조)
- 다.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경비지원(안 제6조 ~ 안 제7조)
- 라. 지도감독 및 공공시설이용, 표창(안 제8조 ~ 안 제10조)

4. 관계법령

- 「교육기본법」 제3조, 제4조
- 「평생교육법」 제5조, 제3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안은 「평생교육법」 제39조¹⁾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천구민 등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
-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,
 - 안 제2조에서는 ‘성인 비문해자’, ‘문자해득*(解得)교육’, ‘문해교육기관’의 정의에 대하여,
 - * 해득(解得) : 뜻을 깨쳐 앎. / 해독(解讀) : 잘 알 수 없는 암호나 기호 따위를 읽어서 풀.
 - 안 제3조에서는 문해교육의 대상에 대하여,
 - 안 제4조에서는 교육의 기회 균등 및 자발적인 학습 등 문해교육의 기본 원칙에 대하여,
 - 안 제5조에서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헤아려서 갖추어야 되는 시책에 대하여,

1) 제39조(문해교육의 실시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·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·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·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.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안 제6조에서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에 대하여,
 - 안 제7조에서는 경비보조 및 지원과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,
 - 안 제8조에서는 교육기관의 지도·감독에 대하여,
 - 안 제9조에서는 문해교육기관의 공공시설 이용에 대하여,
 - 안 제10조에서는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본 제정 조례안은 비문해 성인들의 문자해득 능력 및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기초 생활능력 함양에 관련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비문해자들의 학습권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.
 - 현재 서울시를 포함하여 11개 서울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교육기본법

[시행 2024. 8. 14.] [법률 제20251호, 2024. 2. 13., 일부개정]

제3조(학습권)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,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4조(교육의 기회균등 등) ① 모든 국민은 성별, 종교, 신념, 인종, 사회적 신분,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9. 24.>

평생교육법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588호, 2023. 8. 8., 타법개정]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6. 8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5. 29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4. 23.>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·시설·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, 2019. 4. 23.>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6. 8.>

제39조(문해교육의 실시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4. 18.>

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·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·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·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. 28.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. 28.>

평생교육법 시행령

[시행 2024. 4. 19.] [대통령령 제34406호, 2024. 4. 16., 일부개정]

제72조(문해교육의 지원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<개정 2014. 6. 30.>

1.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
2.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
3.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

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 <개정 2014. 6. 30.>